

정 관



주식회사 하림

정 관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본 회사는 주식회사 하림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HARIM Co., Ltd.라고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양계, 축산물, 가공판매업
2. 양계, 축산물, 수출입업
3. 동위탁사육
4. 부화, 종계업
5. 사료제조업 및 판매업
6. 축사, 축산기자재 제조설치업
7. 부동산 임대업
8. 농산, 수산, 축산판매업
9. 기타 식품류 판매업
10. 축산 가공식품 판매업
11.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2. 위탁, 단체 급식업
13. 식자재 도,소매업
14.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
15. 해외 곡물자원개발 사업
16.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업
17. 출장연회 및 각종 접객서비스업
1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판매업
19. 식당운영 컨설팅
20. 식료잡화판매업
21. 담배도소매업
22. 위생관리업
23. 기타 축산서비스업
24.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25. 프랜차이즈업(체인점 모집 및 경영자문)

26. 신재생에너지 등 자원의 개발, 운영, 판매업
27. 폐자원에너지 관련 사업
28. 물품공급업
29. 선용품공급업
30.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서비스업
31. 응용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32. 냉동, 냉장 보관업
33. 농·축산물 매매수탁업
34. 사료 위탁판매업
35. 식품 가공업
36. 건강 기능식품 제조업 및 판매업
37.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38.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39. 태양광발전 사업 및 전기생산 판매업
40. 포장업
41. 아이스팩 제조업
42.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43. 기타 위 각호의 업무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본 회사의 본점을 전라북도 익산시에 둔다.
-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hari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 경향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6조(1주의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 1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제7조(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86,945,938주로 한다.

제8조(주식의 발행)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9조(주권의 종류) (삭제 2019.09.16.)

제9조의2(주식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신주인수권)

- ① 본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주우선공모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7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발행주식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③ 제2항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11조(신주의 동등배당)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제12조(명의개서대리인)

- ① 본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영업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본 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는 경우, 본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부분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신고) (삭제 2019.09.16..)

제13조의2(주주명부)

본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4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①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다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 ②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다만,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하는 경우 3개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3개월 내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하므로 기준일 제도만으로 운영할 수도 있음.

제3장 사 채

제15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 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전문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에게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③ 전환으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본 회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 또는 주주 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전문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사채의 액면총액이 1,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법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2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18조(소집시기)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19조(소집권자)

- ① 주주총회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 ② 대표이사가 부재중이거나 유고 시에는 제3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하여는 회의일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경향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회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밖에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 ④ 회사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42조의 4 제3항이 규정하는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항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사의 본·지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그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의장)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행을 하거나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4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5장 이사·이사회·대표이사

제1절 이 사

제29조(이사의 수)

본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총수의 4분의 1이상으로 한다.

제30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이사의 임기)

본 회사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가 재임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만료될 경우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제32조(이사의 보선)

-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② 사외이사가 사임,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이사의 직무)

- ①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는 각자 회사를 대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수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이사의 의무)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한다.
- ②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나 감사위원회위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
-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제2절 이사회

제36조(이사회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④ 이사회 의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권자로 한다

제37조(이사회 결의방법)

- ① 이사회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 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 의사록)

-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회)

-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 1. 감사위원회
 -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3. 내부거래위원회
 - 4. ESG위원회
 - 5. 보상위원회
 - 6. 위험관리위원회
 - 7. 기타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관 제36조(이사회 의 소집과 구성) 내지 제38조(이사회 의사록)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상담역 및 고문)

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3절 대표이사

제41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제6장 감사위원회

제42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위원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2조의2(감사위원의 분리선임·해임)

- ① 제42조에 따라 구성하는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분리선임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 ※ 분리선임하는 감사위원은 최소 1명으로 하여야 하며, 회사가 정관으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음.

제43조(감사위원회 대표의 선임)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의 대표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44조(감사위원회의 직무)

- ①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감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 ④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 ⑥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 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위원회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45조(감사록)

-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46조(사업연도)

본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7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 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⑤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⑧ 대표이사(사장)는 제15항 또는 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 ※ (주1)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2)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외부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보고서 제출 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필수로 첨부하여야 함.

제48조(외부감사인의 선임)

본 회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임함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회사는 그 사실을 외부감사인을 선임한 이후에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이익금의 처분)

본 회사는 매 사업연도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임의적립금
4. 배당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0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51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 ③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다만, 제47조 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제52조(분기배당)

-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2에 의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분기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상법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7. 당해 영업년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 ④ 제1항의 분기배당은 분기배당 기준일 전에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본 회사가 설립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연도에 관한 특례)

본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4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설립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1년 6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2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6조, 제 47조, 제 51조, 제52조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4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의 개정 규정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날(2019년 9월 16일 예정)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3항·제5항 및 제42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위원회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사위원회위원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위원회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정관은 2023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